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810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81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50975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손성락, 송명근

피고, 항소인E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민

변론 종결2020. 1. 16.

판결 선고2020. 1. 3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50975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제1심 공동피고 C와 피고 사이에 2018. 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 2. 7. 접수 제 4746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시점인 2018. 2. 7.경 B 주식회사의 미수금 채권이 25억여 원에
이르렀다고 하나, 위 미수금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나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B 주식회사의 자산상태에 관한 사정은, 주채무에 대한 보충성이 없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인 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 피고는 C가 연로하여 아들인 자신에게 부양을 맡기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증여의 동기 내지 경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이성호

판사최한돈

별지